

김제시시민의장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2001-75

김제시시민의장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다음에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 (추천제외대상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민의장 수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.

1. 김제시의회 의원
2. 김제시 소속 공무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 신설 >	<p><u>제6조의2(추천제외대상)</u>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민의장 수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.</p> <p>1. 김제시의회 의원 2. 김제시 소속 공무원</p>

김제시리·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002-14
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02. 10.
제 안 자 : 정영환의원외 인

1. 개정이유

- 리·통장은 리·통을 대표하여 리·통지역안에서의 읍·면·동장 업무중 주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하고, 리·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, 자율적 업무 처리등 12개 항목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나,
- 김제시 리·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3조(리·통장의 임명) 규정에 의거 25세이상인 자가 한번 임용되면 10년이상 재직은 물론, 종신토록 연임할 수 있음.
- 장기재직은 지역현황을 소상하게 파악하는등 장점도 있지만 통·리의 대표자로 장기 재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.

2. 주 요 골 자

○ 리 · 통장의 임명 규정 (안 제3조5항)

-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제한

○ 해임 또는 퇴직된자의 재임명 규정 (안 제3조6항)

- 재임명 불가 규정을 6월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

○ 부 칙 내 용

- 이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
- 현재 임용된 자의 잔여임기 장단에 불구하고 임기 만료후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규정